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정 1992. 3.23.)

(제명변경 2016.12.1.)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2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신규채용, 승진 및 재임용, 전환임용, 정년보장임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희소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6.1., 2018.9.26., 2023.5.2.>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산업체 등 해당 전공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1.30.> <개정 2023.5.2.>

③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6.1.>

④ 본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교원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

⑥ (삭제)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채용절차) 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분야는 해당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세부 전공분야와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3.4.>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23.5.2.>

④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접수하고 전산 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1.6.1.> <개정 2023.5.2.>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연구업적 평가, 2차 발표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11.6.1., 2023.5.2., 2024.3.1.>

⑥ 그 밖의 평가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23.5.2.>

제5조 삭제 <2023.5.2.>

제6조 삭제 <2023.5.2.>

제7조 삭제 <2023.5.2.>

제8조(임용제청) ① 삭제 <2023.5.2.>

② 총장은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및 인품, 대학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복수의 신규임용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9조(직급부여)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르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2. 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체 및 대기업체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관할청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연구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4.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5. 전문대학에서 정년보장 교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규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교수 이상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3장 승진 및 재임용

제10조(계열구분) ①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학 소속 학과의 계열을 준용하며 신규채용 교원은 채용 공고 분야의 계열을 따른다. <개정 2022.12.14.>

계 열	대 학	학 과 (전공분야)
인문·사회 계열	인문대학	전 학과(단, 신학과경배찬양학과(예술) 제외)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
	경영대학	전 학과 (단, IT금융학과(이공) 제외)
	의과학대학	재활학과(인문·사회)
	공과대학	건축학과(인문·사회)
	문화융합대학	생활체육학과(인문·사회), 예술심리치료학과(인문·사회)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외식산업학과, 호텔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인문·사회), 한식조리학과(인문·사회)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문교육과, 가정교육과(인문·사회) 과학교육과(인문·사회), 수학교육과(인문·사회)
	미래융합대학	문화콘텐츠학과(인문·사회), 창업경영금융학과, 농식품경영학과(인문·사회)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인문·사회)
이공 계열	경영대학	IT금융학과(이공)
	의과학대학	전 학과(다만, 재활학과(인문·사회) 제외)
	공과대학	전 학과(다만, 건축학과(인문·사회, 예술) 제외)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이공),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경기지도학과(이공), 생활체육학과(이공), 예술심리치료학과(이공)
	문화관광대학	패션산업학과(이공), 한식조리학과(이공)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이공), 과학교육과(이공), 수학교육과(이공)

예술 계열	미래융합대학	농생명ICT학과, 기술경영공학과, 문화콘텐츠학과(이공)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이공)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예술), 경기지도학과(예술), 공연방송연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영화방송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예술), 음악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예술)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예술)

② 계열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교원으로 한다.

1. 본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또는 7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서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2. 계열변경 심사를 받는 연도의 1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 따른 연구업적이 500점 이상인 교원

③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업적의 계열을 판정하되, 계열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1.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는다.

2. 저서는 한국심신분류법(KDC)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④ 교무처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이 전체 연구업적의 3분의 2 이상인 교원에 대하여 계열변경 ‘가(可)’로 판정하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12.14.>

⑤ 계열변경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11조(유형구분) ①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을 위한 교원의 유형은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일반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HK교수로 구분한다.

② 교수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수유형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1.4., 2023.9.1.>

③ 삭제 <2023.9.1.>

④ 삭제 <2023.9.1.>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임용은 평가 대상기간에 축적한 업적으로 한정하여 심사하며, 교원 유형 및 계열별로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최소 업적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의 연구업적 항목은 충분 요건으로 하며,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1., 2022.12.14.>

①의2 제1항에서 [별표 2]를 적용받는 교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업적 기준을 현 직급 또는 다음 직급에서 [별표 3]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현 직급에서는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따르고, 다음 직급부터는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의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따른다. 다만, [별표 3]에서 [별표 2]로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 <신설 2022.12.14.> <개정 2023.9.1.>

①의3 [별표 3]을 적용받는 교원의 업적평가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조교수1 재임용은 2년, 조교수 재임용은 3.5년, 부교수 재임용은 6년, 부교수 승진은 5.5년, 교수 승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14.>

② 교원은 임용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③ 교원은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

④ 교원은 승진 소요기간 동안 2개 교과목 이상에 대해 교수법 컨설팅 또는 과목당 8시간 이상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인정하는 교수법 향상 관련 교내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

⑤ 조교수는 승진 소요기간 동안 다음 각 호를 추가로 이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9.>

1. 신입교원 컨설팅 이수. 다만, 조교수1로 재직하는 기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부에 개설한 강좌에 대하여 $\bar{K}$ Class($\bar{K}$ Class+, $\bar{x}$ Class, $\bar{t}$ Class를 포함)를 4회 이상 운영. 다만, 조교수1로 재직하는 기간에 1회 이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MOOC, JJ-MOOC(교내 공개강좌), 또는 시그니처 원격수업 강좌를 개발한 경우에도 $\bar{K}$ Class를 1회 운영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11.19.>
- ⑥ 승진소요 최소기간을 초과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때까지 업적을 누적하여 인정하되 업적 최소충족량을 학기별로 상향 조정한다. (업적 최소충족량을 승진 소요 최소 기간(학기)으로 나눈 점수만큼을 학기별로 합산) <개정 2016.8.29., 2022.8.29., 2023.11.19.>
- ⑦ 승진 심사 대상 교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사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탈락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3.11.19.>

제13조(업적평가) 교원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적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4조(승진심의) ① 교무처장은 업적평가 점수에 따라 승진 제청을 위한 순위를 정하되, 업적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구업적, 현 직급 임용일, 신규 임용일, 연령 등의 순으로 한다.

② 총장은 승진 대상 교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 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진을 제청하여야 하며, 승진이 결정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1.>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2.14.>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3.1.>

제15조(재임용심의) ①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을 희망하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재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이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임용 심의결과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되,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 의사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임용 소명) 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명자료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29.>

제4장 비정년계열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임용

제17조(자격) ① 전환심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교에 3년 이상 재직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하며 최근 6년간 업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기간 및 업적은 제19조제1항제1호의 전환심사 업적인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

며, 재직 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은 해당 기간을 심사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1.>

1. 연구업적이 1,200점 이상이고,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이 상위 30% 이내인 교원. 다만, 이공계열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서 정한 I.S.I. 국제전문학술지에 책임저자로 2편 이상의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2. 산학협력업적이 1,200점 이상이고, 연구업적이 600점 이상이며,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 평균이 상위 50% 이내인 교원. 다만, 이공계열 이외 교원의 산학협력업적은 3분의 5를 곱하여 인정한다.

3. 삭제 <2022.12.14.>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16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1.>

[본조개정 2022.12.14.]

제18조(심사기준) ① 연구업적은 발행일 및 제출일, 산학협력업적은 연구간접경비 납부일이 전환 심사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업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연구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 따라 부여하며, 산학협력업적은 같은 규정 [별표 6]에 따라 부여하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간접경비 납부실적으로 한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상한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전환절차) ① 교무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환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환심사 업적인정 기준일(매년 2월 말일)

2. 전환심사 절차 및 주요 일정

3.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4. 그 밖에 전환심사에 관한 사항

② 교무처장은 제17조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속 대학(대학원 및 부서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③ 소속 학장(대학원장 및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해당 학과(부서를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환 평가서를 제출받아 소속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소속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가 교원인사위원회를 대신하며, 대학원, 수퍼스타칼리지 및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없는 학과는 소속인사위원회가 전환평가서를 작성하며, 그 밖의 경우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20.4.14., 2022.12.14.>

④ 소속인사위원회는 전환심의 회의록에 해당 학과의 전환 평가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 평가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게 전환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전환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업적 및 전환 평가서 등을 검토하여 제17조-1제1호 및 제2호의 자격별로 구분하여 전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심사위원회는 해당 학과 및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하면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14.>

1. 삭제 <2022.12.14.>

2. 삭제 <2022.12.14.>

⑥ 전환 후보자의 추천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업적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2.12.14.>

1. 제17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 : 연구업적 + 강의평가 백분위 점수(600점 만점) + 산학협력업적(최대 600점까지)

2. 제17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교원 : 산학협력업적 + 강의평가 백분위 점수(600점 만점) + 연구업적(최대 600점까지)

3. 제1호와 제2호에서 강의평가 백분위 점수는 전임교원 기준 학기별 강의평가 백분위의 평균을 600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⑦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학장(대학원장 및 부서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제20조(전환인원) 전환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제21조(임용시기 등) ① 전환임용 시기는 매년 9월 1일로 한다.

② 전환임용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조교수 2회차(임용기간 4년)로 임용한다. 다만, 전환임용 이전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부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부교수(임용기간 6년)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

③ 전환임용 교원의 호봉은 본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최초 임용 시 산정된 경력에 본교에 재직 한 경력을 합산하여 책정한다.

④ 전환임용 교원의 부교수 승진을 위한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최소업적기준은 제12조제1항의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을 위한 각 기준에 6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12.14.>

제22조(전환심사위원회) ① 전환 대상자를 심사 및 추천하기 위하여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교육혁신본부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년보장교원 임용

제23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8.>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8., 2012.5.18., 2014.1.1., 2021.5.1.>

④ 교육혁신본부장, 선교봉사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

[본조개정 2016.12.27.]

제24조(심사기준)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심사기준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5조(심사) ①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 평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16.12.27.]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7조(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 ① 정년보장교원의 업적평가는 평가시점 기준 최근 2년 또는 4년간의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4.>

② 정년보장교원의 연구업적 기준은 모든 계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80점 이상 또는 최근 4년간 1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항목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적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1. 평가대상 기간에 대학명의로 연구과제책임자로 선정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구업적으로 인정

가.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5천만원을 80점 또는 4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160점으로 인정

나. 이공계열은 2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1억원을 80점 또는 4년간 연구비 총액 기준 2억원을 160점으로 인정

2. 계열과 관계없이 평가대상 기간에 납부한 연구 간접경비 5백만 원당 80점

3. 「교원업적평가규정」 제7조에 따른 교육·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업적

⑤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는 업적평가를 실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 동안 각각 3시간의 책임강의시수를 추가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8.29.][본조개정 2021.3.4.]

보 칙

제2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제9항 및 제10항은 2018년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의 정년계열 전환 임용 규정」,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관리 세칙」, 「교원업적평가 소속계열 변경에 관한 세칙」, 「정년보장교원임용 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3.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8.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별지 제7호 서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 제17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6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강의평가 백분위 점수와 제1호의 산학협력업적 및 제2호의 연구업적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의 업적으로 한정하며, 각각 제17조의 심사대상기간 대비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의 업적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강의평가 백분위 점수 : $600\text{점 만점 환산점수} \times \text{업적인정기간} \div \text{심사대상기간}$

2. 연구업적 및 산학협력업적 : $\text{최대 600점} \times \text{업적인정기간} \div \text{심사대상기간까지 인정}$

②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제7조제5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전체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 강의평가 점수를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5.2.>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12조제1항의2에 따라 본인의 업적 기준 변경 신청은 2023학년도 2학기 중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11.1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1조제2항의 단서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환임용된 교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및 업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삭제 <2023.5.2.>

[별표 2]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 기준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재직 교원) <신설 2022.12.14.>

1. 일반교수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50점	6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600점	1,95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450점	5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500점	1,600점
재임용	조 교 수 (1회차)	2년	150점	150점	150점	500점
	조 교 수 (2회차)	4년	200점	200점	200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50점	250점	250점	1,500점

*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에 한정함

**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에 한정함

2. 산학협력중점교수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생 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	이공 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380점	42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420점	1,400점	600점	9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310점	35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350점	1,120점	500점	750점
재임용	조 교 수 (1 회 차)	2년	100점	100점	100점	350점	160점	240점
	조 교 수 (2 회 차)	4년	140점	140점	140점	840점	320점	480점
	부 교 수	6년	175점	175점	175점	1050점	480점	720점

*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에 한정함

**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에 한정함

[별표 3]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 기준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신규임용 교원) <신설 2022.12.14.>

1. 일반교수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평가대상 기간	연구업적*			교육, 봉사 및 산학협력 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교육·학생지도 업적	소계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5년	740점	825점	825점	1,900점	2,4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5년	810점	900점	900점	1,700점	2,450점
재임용	조 교 수 (1회차)	2년	2년	185점	210점	210점	500점	600점
	조 교 수 (2회차)	4년	3.5년	330점	365점	365점	800점	1,000점
	부 교 수	6년	6년	680점	755점	755점	1,400점	1,750점

* 이공계열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산학협력중점교수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평가대상 기간	연구업적*			산학협력, 교육 및 봉사 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산학협력 업적		소계
							이공계열	기타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5년	740점	825점	825점	825점	550점	2,40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5년	810점	900점	900점	750점	500점	2,450점
재임용	조 교 수 (1회차)	2년	2년	185점	210점	210점	240점	160점	600점
	조 교 수 (2회차)	4년	3.5년	330점	365점	365점	420점	280점	1,000점
	부 교 수	6년	6년	680점	755점	755점	720점	480점	1,750점

* 이공계열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3.5.2.>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2.25.>

수신: 교무처장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최종학위명		
		학과 전공		전공 () 박사(석사)		
계열 변경 내용	현재 소속 계열			희망 평가 대상 계열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	예술계열 ()	인문사회계열 ()	이공계열 ()	예술계열 ()
변경신청 사유						
비고	1.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 받음 2.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위와 같이 본인의 평가대상 계열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수신: 교무처장

교수 유형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및 평가 계열
		학과 전공		전공 계열
교수유형 변경 내용	현재 유형		희망 유형	
	산학협력 중점 ()	일반 ()	산학협력 중점 ()	일반 ()
교수유형 선택기간	() 학년도 () 학기부터			
비 고	1. 선택기간은 최소한 2년입니다. 종료기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교수 유형에 따라 책임시간이 다릅니다. 3. 교수 유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점수의 합산방식이 다릅니다. 4. 특정한 교수유형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일반으로 분류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교원업적평가 유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12.14.>

비정년계열 교원의 정년계열 전환 평가서

전 환 평 가 대 상 자	성 명	
	소 속	대학(원) 학과
	직 위	
학 생 지 도 참 여 정 도		
학과 및 대학 발전기여정도 (행사참여 등)		
기 타 (교원윤리 및 품위유지 등)		
종 합 의 전		
평 가 등 급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등급은 학과 회의(정년계열)에서 합의 또는 다수결로 결정하며, 과반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으로 판정함.

※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 소속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과에게 전환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대학(원) ○○○○학과

학과장	(인)	소속교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학과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 과반수가 자필 서명하여야 함